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38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나30729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3. 10 선고 2022가단138181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A

변론종결 2023. 2. 3.

판결선고 2023. 3. 1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소외 B와 피고 사이에 2021. 12. 6. 체결된 매매계약을 18,664,9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664,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소외 B는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20. 11. 25. 원고와 신용보증원금 19,000,000원, 보증기간 2020. 11. 26.부터 2025. 11.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C은행에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당시, B는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B가 2022. 4. 26.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C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2022. 8. 25. 원고는 B를 대위하여 C은행에 금19,221,4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 11. 3. “ 18,664,970원과 그 중 18,664,849원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보 송달일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구상금 채권이라 한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B는 2021. 12. 6. 아들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21. 12. 13. 접수 제615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는 무자력이었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7. 2. 22.과 2013. 3. 6. D조합이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근저당권들이 2022. 2. 28. 해지 되었으므로 위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권액인 18,664,97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리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사해의사가 없었다.

3. 판 단

가. 손해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2. 4. 26. B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E의 신용정보조회결과, 법원행정처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가 무자력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즈음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최소한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비하여, 피고가 매매대금 63,000,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B의 아들인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타당하다.

따라서 결국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가액배상에 관한 판단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해지한 D조합의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무는 채권최고액의 합계금 39,600,000원(= 3,360만원 +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0,4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8,664,9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별지